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30
- 나. 발 의 자: 김지수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11월 3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강서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사용 제도, 안내문 게시, 위생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제8조, 제9조, 제36조, 제71조, 제72조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위생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1. 7. ~ 11. 14.) 결과 의견 있음

- 1)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2022. 11. 08.)
- 2) 강서구청 위생관리과(2022. 11.14)

(※ 세부내역 별첨 참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5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꼬치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사용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3조(사용 제도) 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목재류를 교체하도록 제도하여야 한다.

- 꼬치어묵의 나무 꼬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문집¹⁾을 통해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 「식품위생법」에서 ‘세척·살균하는 등’ 방법 이외에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재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어

1) Q. 꼬치어묵의 나무 꼬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 어묵용 나무 꼬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목재류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나무 꼬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6.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별표 1] 6.’은 [별표 1] 7.’로 개정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상반기 자주 하는 질문집-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위생 인증 안내문 게시, 점검 및 제도, 위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감시활동)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 및 제도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교육)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꼬치 목재류 중 특히 어묵의 경우는 영세상인들의 영업이 많아 꼬치 목재류 구입 비용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점검 및 제도는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 기존의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 검토를 통해
- 식품 위생상태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검이 아닌 지도와 안내 중심의 운영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재사용을 제한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는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음식 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주민 복리 증진, 급부, 지원 등 조성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침익적 행정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 지역 여건과 현행 식품위생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위생교육을 통한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정책운영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

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향아리, 뚜껑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
Korea Foodservice Industry Association

수신자 김지수 의원

(경유) 보좌관

제목 어묵꼬치 등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견

1. 항상 강서구 발전과 구민 보건 향상 및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사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2-49호

3. 위와 관련하여 강서구 외식업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의정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의견사항

가. 식품위생법상 꼬치 목재류는 충분한 세척 후 재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어묵,꼬치 등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으로 조례안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서구의 어묵꼬치를 사용하는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로 꼬치 재사용 시 위생적으로 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묵꼬치를 일회성으로 사용하여 버리면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거로 사료됨.

다. 코로나19로 2년반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이 상당하여 업소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사용했던 제품을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건 우리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라. 요즘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 재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은 최대한 재사용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취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서구지회



담당 : 신재성과장

총무부장 : 정만호

사무국장 : 김민석

시행 : 정경650-122(2022.11.08.)

0768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9길 5-10,2층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

phone_02.2607.1947

facsimile_02.2690.7363

e_mail_food1947@kakao.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1. 조례안 개요

-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나. 제안취지: 강서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전염성 질병 예방 및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 다.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 꼬치 목재류 용어의 정의
 -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 교체하도록 계도하여야 함
 - 구청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 권고를 노력해야 함
 -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활동 시 해당 조례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하여야 함
 - 업주대상 위생교육 시 해당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검토의견

- 가. 검토 사항
- 조례안 제목 중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 문구 수정 검토
 - 제3조 내용 중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고’ 문구 수정 검토
 - ‘구청장 위생 인증 안내문’ 시행 관련 실무적 검토
 -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검토
- 나. 세부 검토 내용
- 꼬치 목재류 중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꼬치어묵의 나무 꼬치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가능한 것으로 기술됨

Q. 꼬치어묵의 나무 꼬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어묵용 나무 꼬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중 목재류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식품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나무 꼬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6.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1]7. 에 규정)

-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지침에 재사용 제한 규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무 꼬치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한 바, 조례에서 ‘재사용 제한’을 규정할 경우 상위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음.

- 또한,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서 해석하는 바와 다른 내용을 계도해야 함을 강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

※ 현실적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는 목재류에 대한 정의, 공통기준, 재질별 잔류·용출 규격, 시험 방법만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단순 세척·살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위생불량 기준 및 재사용 제한 횟수, 폐기처분을 규정한 관련 법규가 없어 행정처분 불가함.

○ 업주 및 상인의 입장에서 근거 법령과 기준이 없는 사용제한 계도·단속 활동은 과도한 침익적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구청장 위생 인증 안내문’ 시행 관련 실무적 검토

- 구청장 위생 인증 제도의 경우, 업소에서 재사용하는 꼬치 목재류가 안전함을 공증하는 제도는 불가하나, 지자체 사업으로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참여 업소 인증서’ 차원의 교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식품위생법」은 위생등급 지정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식약처 소관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위생 인증’이란 문구 사용은 주민의 혼란 초래 및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해당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세업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및 영업 이익 감소 등 불이익 초래 가능성이 있음.

3. 수정안 제안

| 구 분 | 조 례 안 | 수정 제안 |
|--------------|--|---|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u>재사용 제한</u> 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u>위생 관리</u> 에 관한 조례안 |
| 제3조 (사용 제도) | 제3조(사용 제도) 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목재류를 <u>재사용하지 않고</u>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목재류를 교체하도록 <u>계도하여야 한다.</u> | 제3조(사용 제도) 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목재류를 <u>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u>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목재류를 교체하도록 <u>계도할 수 있다.</u> |
| 제4조 (안내문 게시) |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위생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위생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u>조치를 할 수 있다.</u> |
| 제5조 (위생감시활동) | 제5조(위생감시활동)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 <u>하여야 한다.</u> | 제5조(위생감시활동)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 <u>하도록 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조례 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구 위생관리과-200422(2022.11.03)호와 관련입니다.
2. 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료 위생관리에 관한 조례)과 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내용

①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에 대한 재사용 가능여부

-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식약처)에 따르면 어묵용 나무꼬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목재류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경우 식품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나무꼬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②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가 없는 꼬치 재사용 제한 및 폐기처분 계도를 강행규정으로 제정 가능한지 여부

- 동 사항은 식품위생법 유권해석 사항이 아닌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므로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에 질의 요망

③ 자치구 어묵꼬치 위생 인증제도 등 시행 가능여부

- 구에서 자체 위생관리 계획에 따라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 하지 않는 업소를 발굴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기관 인증을 하는 것은 가능

④ 구청장 위생 인증제도 시행이 가능할 경우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조를 근거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 ② 질의 답변과 동일함

붙임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집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



| | | | | | |
|------|--------------|-------------------------------------|-------------|--|---|
| 주무관 | 이희진 | 외식업위생팀 장 | 이용호 | 식물정책과장 | 2022. 11. 7. 정진숙 |
| 합조자 | | | | | |
| 서행 | 식물정책과-40141 | (2022. 11. 7.) | 겸수 | 위생관리과-200585 | (2022. 11. 7.) |
| 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물정책과 (태평로1가) | | | / http://seoul.go.kr |
| 전화번호 | 02-2133-4711 | 팩스번호 | 02-768-8669 | / lrro00@seoul.go.kr | / 비공개(5) |